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86호 2022. 1. 5. (수)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865호 정선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866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5
- 정선군 조례 제2867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13
- 정선군 조례 제2868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18
- 정선군 조례 제2869호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21
- 정선군 조례 제2870호 정선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25
- 정선군 조례 제287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39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6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43
- 정선군의회 규칙 제11호 정선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50
- 정선군의회 규칙 제12호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52
- 정선군의회 규칙 제13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53
- 정선군의회 규칙 제14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69
- 정선군의회 규칙 제15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74
- 정선군의회 규칙 제16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83
- 정선군의회 규칙 제17호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177
- 정선군의회 규칙 제18호 정선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179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1-168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
형도면 승인 고시.....185
- 정선군 고시 제2021-176호 정선군 조동1.2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189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1522호 정선군 반운영 규칙 일부개정.....191
- 정선군 공고 제2021-1523호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206
- 정선군 공고 제2021-1547호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216
- 정선군 공고 제2022-6호 정선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2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 및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24.)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65호

정선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

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적용배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과 능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9조)

마.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10조)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 및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24.)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66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15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그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마다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④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 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일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⑥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또는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20일의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 서 문
(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7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5조)

나.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다. 공무원의 휴가, 연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6조)

라.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 및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24.)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67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정선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제2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

(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나. 정선군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여비의 지급 구분(안 제2조)
-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안 제3조)
- 다. 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안 제4조)
- 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안 제5조)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 및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24.)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68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정선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에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정선군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 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퇴직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
2. 우수·효행·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3.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5.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임신 공무원을 위한 임신부 용품 지원
8.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9.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범위의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후생복지제도 등 통합운영) 의장은 정선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나. 정선군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안 제3조)
- 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안 제6조)
- 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7조)
- 마.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위탁(안 제8조)
- 바. 후생복지사업 등의 통합 운영(안 제9조)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 및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24.)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69호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정선군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정선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법 제47조에서 제51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 배정표
(제6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의회사무과
합 계			13
일 반 직			13
일반직	5급	소 계	2
		행 정	2
	6급	소 계	3
		행 정	3
	7급	소 계	2
		행 정	2
	8급	소 계	3
		행 정	1
		속 기	1
		운 전	1
	9급	소 계	3
		행 정	1
		시설관리	1
		운 전	1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1.13. 시행)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 범위,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 배치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정선군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안 제6조)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 및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24.)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70호

정선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의3 등”을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를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정선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이라 한다)제35조제2항”을 “이라 한다)」 제39조”로 한다.

제4조(「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3조제1항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33조”를 “제36조”로 한다.

제6조(「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를 “당해”로,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68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8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3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2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정선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개정)

정선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정선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로 한다.

제9조(「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의 개정)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8조----- ----- ----- -----.
제3조(비용추계 대상)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비용추계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 제19조----- ----- -----.

□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u>	<u>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4조에 따라 ----- ----- ----- -----.

□ 정선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 -----.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 략) ②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35조 제2항에 따른 정선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의 라 한다)」 제39조----- ----- ----- -----.

현행	개정안
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정선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2(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전부터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 제46조에 따라 ----- ----- -----. 제9조(겸직금지) ----- ----- 제43조제1항 규정에 따라 ----- -----. 제9조의2(겸직신고) ① ----- ---- 법 제43조제1항 ----- ----- ----- ----- ----- -----. ② ---- 법 제43조제3항----- ----- -----

현행	개정안
에 따른다.<중전 제1항에서 이동 2019.5.31.> ③·④ (생략)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u>법 제36조제2항</u>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1. (생략) 2. 겸직을 하는 것이 <u>법 제36조제2항</u>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 6.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u>법 제44조제2항</u>----- ----- -----. 제17조(징계)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u>법 제44조제2항</u>----- ----- 3. ~ 6. (현행과 같음)

□ 정선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	제1조(목적) ----- <u>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u>----- ----- ----- -----

현행	개정안
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여비) ①·② (생략) ③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본항 전부개정 2006.05.09., 2019.02.15〉	----- --. 제4조(여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36조 ----- ----- ----- -----

□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	제1조(목적) ----- -----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 ----- ----- ----- ----- -----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 1. (현행과 같음) 2. 당해 -----

현행	개정안
<u>정에 의한 당해</u>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u>법 제117조 및 제120조</u>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정선군이 설치한 <u>법 제146조</u>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u>법 제104조제2항</u>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생략) ② (생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u>법 제9조</u>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생략)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 ----- <u>법 제134조</u>----- ----- --- 3. ----- <u>법 제163조</u>---- ----- 4. <u>법 제168조제2항</u> ----- ----- ----- ----- ----- -----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u>법 제13조</u>-----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현 행	개 정 안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u>법 제 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u> 지방 의회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u>법 제49조제4항에 따라</u> ---- ----- ----- -----.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u>제12조의 규정에 의한</u>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u>제13조의 규정에 의한</u>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정선군의회의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 ----- -----.

□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9조·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84조에 따른</u> ----- ----- ----- -----.
제3조(회기운영) ①의회는 <u>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u> 정례회를 매년 2	제3조(회기운영) ①----- <u>법 제53조</u> <u>에 따라</u> -----

현행	개정안
회로 나누어 개최하고, 매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② (생략) 제4조(정례회 집회일) <u>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u>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 1. 2. (생략) 제5조(안건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 <u>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u>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u>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u>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u>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06.16.> ③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례회 집회일) <u>법 제53조제2항에 따른</u> ----- -----. 1. 2. (현행과 같음) 제5조(안건심의) ①----- - <u>법 제150조에 따라</u> ----- -----. ②----- <u>법 제49조제1항에 따라</u> ----- ----- <u>법 제142조에 따라</u> ----- -----. ③ (현행과 같음)

□ 정선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생략)	<u>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제51조에 따라 ----- ----- -----. 제2조(범위) -----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 ----- 4. (현행과 같음)

□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제1조(목적) ----- <u>제46조제2항</u>----- -----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
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선군의회와 관련된 인용조문 등 수정을 위해 일괄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나.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 다. 정선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라.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마.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바.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사.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아. 정선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자.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10.) 및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 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7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61명” 을 “65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61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650명</u> 이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u>	<u><삭 제></u>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삭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50	650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25	625				
4급	4	3		1		
4급·5급	0	0		0		
5급	31	15	0	4	1	9
6급 이하 계	591	591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2			2		
지도사	18	18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2021.01.12.) 및 시행(2022.01.13.)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전면시행 전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661명 → 650명 (감 11명)

- 집행기관의 총수 : 650명 → 650명 (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 0명 (감 11명)

나.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별표 3)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의회사무과를 삭제

규 칙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12. 10.)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6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계	분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합 계			650	305	131	18	93	103
정 무 직			1	1				
일 반 직			625	302	109	18	93	103
지 도 직			20	0	20	0	0	0
연 구 직			4	2	2	0	0	0
정 무 직			1	1				
일 반 직	4급	지방서기관	2	2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5급	소 계	29	15	4	1	4	5
		행정	8	8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시설	3	3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시설·공업	1			1		
		행정·농업·사회복지·시설	5				3	2
		행정·농업·환경·시설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농업·농촌지도관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1		1			
	6급	소 계	1		1			
		행 정	154	77	26	5	21	25
		세 무	47	31		1	6	9
		농 업	4	4				
		녹 지	5		5			
		시 설	2	2				

		환 경	11	11				
		사회복지	2	2				
		행정 · 세무	1				1	
		행정 · 사회복지	6	4			2	
		행정 · 농업	15	5			4	6
		행정 · 녹지	4		1			3
일 반 직	6급	행정 · 전산	2	2				
		행정 · 공업	2	1			1	
		행정 · 보건	2	2				
		보건 · 식품위생 · 간호 · 의료기술	1		1			
		행정 · 환경	1		1			
		행정 · 시설	4	2			1	1
		농업 · 수의	6	5			1	
		농업 · 시설	1		1			
		농업 · 시설 · 녹지	1		1			
		시설 · 공업	3				3	
		공업 · 농촌지도사	2			2		
		농업 · 농촌지도사	1		1			
		행정 · 농업 · 녹지	1				1	
		행정 · 농업 · 사회복지	2				1	1
		행정 · 환경 · 공업	1			1		
		행정 · 환경 · 보건	1	1				
		행정 · 농업 · 시설 · 녹지	5					5
		방송통신 · 전산	1	1				
		보건 · 간호 · 의기	8		8			
		보건진료	7		7			
		운전 · 기계운영	3	3				
		사무운영 · 시설관리	2	1		1		
일 반	7급	소 계	183	96	31	5	23	28
		행 정	52	31			8	13
		세 무	8	7				1
		사회복지	12	5			3	4
		전 산	2	2				
		공 업	1	1				

직		농업	3		3			
		수의	1		1			
		녹지	2	2				
	7급	보건	7		7			
		의료기술	3		3			
		간호	5		5			
		환경	4	2		2		
		시설	21	13	1	1	2	4
		방송통신	1	1				
		행정·사서	1	1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3	5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7	5		1	1	
		행정·방재	1	1				
		전산·방송통신	2	2				
		농업·수의	2		2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2		2			
		보건진료	3		3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1	1				
		기계운영	2				1	1
		운전	5	3	1		1	
		사무운영	2	1			1	
		운전·기계운영	2	2				
		사무운영·시설관리	1	1				
	8급	소계	143	67	28	6	21	21
		행정	32	20		1	6	5
		세무	3	3				
		사회복지	11	3	1		1	6

		전 산	0	0				
		공 업	4	2		2		
		농 업	4		1		2	1
일 반 직		녹 지	3	3				
		보 건	0					
		의료기술	2		2			
		식품위생	1		1			
		간 호	5		5			
		환 경	3	2		1		
		시 설	18	11		1	4	2
		전산·방송통신	1	1				
		방재안전·환경	2	2				
		행정·세무	5				4	1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8	4				4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9		9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0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1		1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1	1				
		시설관리	1	1				
		운 전	5				4	1
		속 기	0					
	9급	소 계	111	44	18	1	24	24
		행 정	25	12	1		7	5
		세 무	3					3
		사회복지	20	6	1		6	7
		공 업	4	3		1		

		농 업	6		3		2	1
		녹 지	2	2				
일 반 직		환 경	2	2				
		보 건	6		6			
		의료기술	1		1			
		시 설	10	7			2	1
		행정·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1				1	
		전산·방송통신	2	2				
		시설·전산	1	1				
		토목운영	3	3				
		전화상담운영	0					
		전기운영	0	0				
		기계운영	1		1		0	0
		열관리 운영	0					
		운 전	14	3	4		3	4
		사무운영	5	1	1		2	1
		시설관리	3				1	2
		통신운영·전기운영	0					
		소 계	1	0	1	0	0	0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관)	1		1			
지 도 직	지도직 소계		20	0	20	0	0	0
	4·5급 상당	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5급상당	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5급상당	농촌지도관	18		18			
	6급상당	농촌지도사	4	2	2	0	0	0
연 구 직	연구직 소계		1	1				
	6급상당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2		2			
		농업연구사	2		2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2021.01.12.) 및 시행(2022.01.13.)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전면시행 전 관련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별표)

○ 총 661명 → 총 650명 (감 11명)

나. 조정내역

○ 의회사무과 감원 : 11명

- (5급 2명) 행정 2명
- (6급 3명) 행정 3명
- (7급 1명) 행정 1명
- (8급 3명) 행정 1명, 운전 1명, 숙기 1명
- (9급 2명) 운전 1명, 시설관리 1명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선군의회 의장

정선군의회 규칙 제11호

정선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정선군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선군의회 의장

정선군의회 규칙 제12호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대리한다.
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대리의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선군의회의회장

정선군의회 규칙 제13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5. 항공운임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5조(허가) 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대내·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류 보완)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출장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출장자는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에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공무원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정담당·의사담당·전문위원이 된다.

③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사내용) ① 위원회는 출장계획 중 다음 사항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출장경비의 신청 및 지급)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비 지급을 신청하고 공무원의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출장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5호에 한함)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해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울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 적립내역을 새울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4조 관련)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2. 출장목적

- ○

3.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 인물 (직책 포함)
4. 5 (월)	인천 15:00	LA 08: 45			
4. 6 (화)					
4. 7 (수)					
4. 8 (목)					
4. 10 (금)	LA 10:00				
4. 11 (토)		인천 18: 20			

※ 날짜 및 시간은 항상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함.

(도착지는 도착지 시간을, 출발지는 출발지 시간을 표시)

4. 출장경비

성 명	계	항 운 공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5. 출장경비 산출내역

성 명					
직 급					
체재 비등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비금				
	소 계				
항 공 료					
그 밖의 사항					

※ 산출요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

6. 출장자 주요임무(2명 이상인 경우)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업무

※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공무국외출장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서식변경 작성 가능

7. 출장효과

- ○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경력서

(제4조 관련)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요경력 :

기 간	근 무 경 력

○ 최근 3년간 국외출장 경력 :

기 간	출장목적 (방문국)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 . .

○○급 ○○○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제4조 관련)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귀국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마일리지 사용내역 등)를 소정의 기일 안에 제출·등록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언행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출장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제4조 관련)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_____를 위하여 _____
_____기간 중 _____을(를) 방문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 누설
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됨을 깊이 인식하여 절대보안을 유지할 것
이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서 약 자

⑨

정선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의안건

(제10조제3항 관련)

안건번호		주관부서	
안 건 명			
제안이유	☐ ☐		
주요내용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 . . ~ . . . (○박 ○일) ☐ 방 문 국 : ☐ 출장경비 : 천원 ☐ 예산과목 : ○○과 국외여비 ☐ 출 장 자 : 명(○○○외 ○명) ☐ 주요활동계획 ☐ ☐ ☐ 기대효과 ☐ ☐		
붙 임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부. - 관련서류 1부.		

※ 출장의 성격, 내용을 감안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요약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제10조제3항 관련)

☐ 심의사항

출 장 자			출 장 명 (목적)	출장기간	방문국	출장경비
소속	직위(급)	성명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정선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 ○ ○

☐ 결정조서

구분	직 위	성명	의 건		비 고
			가	부	

※ 가·부 의견란에 서명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여비 지급신청서

(제13조제1항 관련)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장일정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출장지																				
항 공 운 입	적용 등급	☐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운임 정액	₩																			
	활용 내용	☐ 항공권 구매 ☐ 좌석 승급 ☐ 활용 불가																			
	활용 불가 사유	☐ 보유 없음 ☐ 보유 부족 ☐ 보너스 항공권 없음 ☐ 기타 사유(내용 기재)																			
	청구 금액	₩																			
	※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25%;">항공사</th> <th style="width:25%;">총 마일리지</th> <th style="width:25%;">금번 활용 마일리지</th> <th style="width:25%;">잔여 마일리지</th> </tr> <tr> <td>대한항공</td> <td></td> <td></td> <td></td> </tr> <tr> <td>아시아나항공</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항공사명)</td> <td></td> <td></td> <td></td> </tr> </table>						항공사	총 마일리지	금번 활용 마일리지	잔여 마일리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타(항공사명)		
항공사	총 마일리지	금번 활용 마일리지	잔여 마일리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타(항공사명)																					
정 액 여 비 (US \$)	구 분	산 출 내 역			합계 : \$																
	일 비				\$																
	식 비				\$																
	숙박비				\$																
	준비금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 적용 등급란은 여비규정상 여비 적용 등급 구분에 따라 “√” 로 표시
- ※ 운임 정액은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을 말함
- ※ 활용 내용란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업그레이드(승급), 활용 불가한 경우에 “√” 로 표시
- ※ 활용 불가한 경우 사유를 구분에 따라 “√” 로 표시하고, 그 밖에 사유는 내용을 자세히 기재
- ※ 청구금액은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 출장에 필요한 항공요금을 기재함

[별지 제8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14조제1항 관련)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예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IV.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 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9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

(제16조제2항 관련)

연번	허가 일시	출장 목적	출장 기간	방문국	방문 기관	출장 인원	출장경비(천원)	
							총 액	1인당

※ 출장목적란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시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항목	확 인 사 항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목적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4. 정선군 의정발전(이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한정하였는가?
	2. 방문 국가 및 기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하였는가?
	3. 방문기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가?
	4.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였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1.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였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한 시기인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여비조례에 의한 출장경비 산출이 적정한가? (기내식 및 기내숙의 경우 여비에서 제외)
	2.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 항공운임증명서(invoice)에 의거 산출이 적정한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였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하였는가?
	3.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는가?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선군의회회의장

정선군의회 규칙 제14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선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

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근무상황부를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제3조제2항 관련)

(부서 : 직급 : 성명 :) (앞쪽)

부서명 :

월 \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20 . . .

결 재				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서명 또는 날인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동사항 :							
여비				정산			

210mm×297mm[백상지(80g/㎡)]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선군의회의회장

정선군의회 규칙 제15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정선군의 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써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급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름
------	-----	--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④ 직급·계급·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한자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사무과장

직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제4조제1항 관련)

1. 소 속:

2. 직 위:

3. 직급·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

(제12조 관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름			
소속		공무원 구분	[]일반직(임제 제외) []특정직() []별정직	직급·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4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	---	-----------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사무과장

직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소속기관	→	지급결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	신청인 통지 소속기관	→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제12조 관련)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의회의장 귀하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선군의회회의장

정선군의회 규칙 제16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0,000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000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000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 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라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1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의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1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

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와 같다.
-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따른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 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8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

-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3장 임용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

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

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고, 해당 직렬·직류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해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

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다.

③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7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 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가산점’으로 본다.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9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5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13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계급 직렬 / 직류		연구관 · 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	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계급 직렬 / 직류		연구관 · 연구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물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4항, 제15조제5항, 제19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 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 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 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 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 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
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4조제1항, 16조제1항관련)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
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1]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데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 사 :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 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 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 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 산업기사 : 지, 방재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 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 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기 사 :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사 :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 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 능 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 능 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산업기사 : 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 기 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 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 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 (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 (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 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 품위생	식 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임상병리사(특수) 방사선사(특수) 간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선사(일반)(3) 간독자(3)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선사(일반) 간독자(1)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 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숙 기	숙기			한글숙기 12급(5)	한글숙기 123급(2)	한글숙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2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1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1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1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1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1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1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화 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직류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 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정,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정,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정,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정,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정,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정)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정)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정)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적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정)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1]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제1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1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7의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제1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원자 로조종감독자, 핵 연료물질취급감독 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 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원 자로조종사, 핵연 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 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 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 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 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벼짓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 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 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생명유전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 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 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 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 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 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 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2급, 보건교육 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보건교 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기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정,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정,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가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기 능 장 :	산림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시 설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도시계획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일반토목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기 능 사 : 전기, 기계정비, 조정	
------	------	---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학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정,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정,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정,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정,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정,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정,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 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 경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5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 연구관 지도관	3급 · 연구관 지도관	4급 · 연구관 지도관	5급 · 연구관 지도관	6급 · 연구사 지도사	7급 ·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경 감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감 소 정	소 방 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위 위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관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 비 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4항, 제17조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시 설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	축 지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5항, 제17조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1]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기 계 운 전
	전 기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환 경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식 물 검 역
	농 업 경 영	농 업	농 업
		농 촌 지 도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경 영
	산 업 곤 충	농 촌 지 도	잡 업
	원 예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원 예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생 명 유 전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생 활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촌 사 회	농 촌 생 활
			축 산	축 산
	농 공	농 촌 지 도	축 산	
		공 업	농 업 기 계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촌 지 도	농 업 기 계	농 업 토 목
			녹지연구	임 업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농 촌 지 도	전 임 업	
	수 의	수 의	수 의	
해양수산연구	해 양 환 경	환 경	수 질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자 원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양 식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공 학	해 양 수 산	어 로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가 공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경 제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 반 의 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공 중 보 건	보 건	보 건	
식 품 위 생		식 품 위 생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전 직 류	
시설연구	토 목	시 설	일 반 토 목	
	건 축		농 업 토 목	
방재안전연구	안 전 관 리	방 재 안 전	건 축	
	재 난 관 리		방 재 안 전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류
농	촌	지	도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작	물
				작	물
				농	업
				농	업
				원	예
	농	업	농	농	업
				경	영
	임	업	녹	전	직
				임	업
	잠	업	농	조	경
				산	업
	원	예	농	곤	충
				원	예
	축	산	농	축	산
				축	산
	가	축	수	수	의
				수	의
	농	촌	농	수	의
				수	의
어	촌	지	도	농	촌
				생	활
				농	촌
				생	활
				농	촌
				생	활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해	양
				수	산
				수	산
어	촌	지	도	해	양
				수	산
				수	산
어	촌	지	도	해	양
				수	산
				수	산

[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4조제1항 관련)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비 고 :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4조제2항관련)

구분 \ 상당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채직한 기간	“나급”으로 채직한 기간	“다급”으로 채직한 기간	“라급”으로 채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채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채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채직한 기간	“나급”으로 채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채직한 기간	“6호”로 채직한 기간	“7호”로 채직한 기간	“8호”로 채직한 기간	“9호”로 채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 제		“가급”으로 채직한 기간	“나급”으로 채직한 기간	“다급”으로 채직한 기간	“라급”으로 채직한 기간	“마급”으로 채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 · 준위	원사 · 상사 ·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 공 무 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 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 · 검사		4-2호봉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8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		2 급 · 연구관· 지도관	3 급 · 연구관· 지도관	4 급 · 연구관· 지도관	5 급 · 연구관· 지 도 관	6 급 · 연구사· 지 도 사	7 급 · 연구사· 지 도 사	8 급	9 급
교육공무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학 교 및 동부설연 구소의 교원포함)	교 수	교 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 교 수 전임강사 (2년이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6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2 호 봉 이 상 의 교 원	11 호 봉 이 하 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		이 사 (3년이상)	이 사	부 장	과 장 (차 장)	계 장 (대리)	평 사 원 (3년이상)	평 사 원	

[별표 15]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5급~9급)

계급		5급	6급·7급	8급·9급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 2급
	재경			
	기업행정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이터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계급		5급	6급 · 7급	8급 · 9급
직렬	직류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 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3.27.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즈, 산업안전, 품질경영)

직렬	계급		5급	6급 · 7급	8급 · 9급
	직렬	직류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이산화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의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로				
	해양교통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직렬	계급		5급	6급 · 7급	8급 · 9급
	직렬	직류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 · 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 · 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 · 6급 기관사	
보건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방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 · 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렬	계급		5급	6급 · 7급	8급 · 9급
	직렬	직류			
	수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계급		5급	6급 · 7급	8급 · 9급
	직렬	직류			
	건축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도시교통			
	설계	설계			
방송통신	디자인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통신	통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송기술			
조리	전자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			
방재안전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계급		5급	6급 · 7급	8급 · 9급
직렬	직류			
토목운영	토목운영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건축운영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배관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기운영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계급		5급	6급 · 7급	8급 · 9급
직렬	직류			
기계운영	기계운영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영사운영			
화공운영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농림운영	영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
보건운영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2.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렬	직류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작용용)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 이전 취득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렬	직류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 전문상담사 1급, 영양사, 위생사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경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축산) 수의사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학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사	
	약학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간호사, 조산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렬	직류		
환경연구	환경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시설연구	토목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재난관리		기사(방재)

3.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업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 ※1999.3.27이전 취득	
	원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 영양사		
	어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별표 16]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제27조제2항 관련)

☐ 인사교류로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가산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2.4점까지 부여)	1개월마다 0.1점

[별표 17]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 (제27조제3항 관련)

대상분야	부 여 요 건 (항 목)	가산점	비 고
각종대회 수상실적	☐ 공인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대회 등에서 수상 ① 최우수상(1위) ② 우수상(2위) ③ 장려상(3위)	0.5점 0.3점 0.1점	☐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인기관·단체주관의 학술(경진)대회·발표회 등 성적 우수자 - 중앙·도 공무원교육 성적우수자 (인사부서 교육 선발자, 과제발표 제외)
예산절감	☐ 연간 예산절감액이 ① 2억원 이상 ②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③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④ 3천만원 이상 ~ 5억원 미만	0.5점 0.4점 0.3점 0.1점	☐ 제도개선·기술개발을 통한 예산절감에만 적용되며 - 청산과 관련될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점 - 핵심기여자에 대해서만 배점의 만점을 인정
군정시책 및 아이디어 발굴실적	☐ 군정시책 또는 업무관련 아이디어공모 채택시 ① 최우수상(1위) ② 우수상(2위) ③ 장려상(3위)	0.3점 0.2점 0.1점	☐ 정선군의회, 정선군 및 정선군 공무원노동조합 주관 군정시책 및 아이디어 공모 채택시 배점의 만점을 인정 - 최우수상(1위)는 1명 - 우수상(2위)는 2명 이내 - 장려상(3위)는 3명 이내
기업체 유치실적	☐ 10명 이상 상근자 고용기업 유치 공무원 ① 30명 이상 상근자 고용기업체 ② 20명 이상 30명 미만 상근자 고용기업체 ③ 10명 이상 20명 미만 상근자 고용기업체	1.5점 1.0점 0.5점	☐ 유치 기업체의 공사착공일을 근거로 -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서장, 담당주사 및 담당자만 적용
공모사업 선정실적	☐ 중앙 및 도 공모사업의 국·도비 확보액 ① 50억원 이상 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④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⑤ 1억원 미만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중앙 및 강원도 공모사업의 국도비 확보액 - 공모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서장, 담당주사 및 담당자만 적용
적극행정 추진실적	☐ 적극행정 등 우수 공무원 선정 ① 중앙단위 (최우수 1.0, 우수 0.7, 장려 0.5) ② 도 단위 (최우수 0.5, 우수 0.4, 장려 0.3) ③ 군 단위 (최우수 0.3, 우수 0.2, 장려 0.1)	1.0점 0.5점 0.3점	☐ 적극행정 및 업무혁신 협업우수자 - 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따른 특별승급 및 특별승진자 등에 대하여는 가점 제외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응 시 표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 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귀하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연월일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⑤ 성별	⑥ 현주소	⑦ 최종 출신 학교명	⑧ 특기	⑨ 병열필 미필	⑩ 희망 기관	⑪신원조사			⑫추 천					⑬임 용			비고
										의뢰	회보	송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연월일	직명	근무 관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 붙 임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끝.

(발 신 기 관 명)

직 인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명	임 용 연 월 일	임 용 직 급	임 용 직 위	비 고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 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 월일	년 월 일	주 소			
시험구분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합격일자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학 력				경력					
임용상황	임용일자	임용부서		시보시간		시보단축기간	시보단축사유		보직부여
	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		월			일자 : 년 월 일 직위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	배치부서								
	수습 계획 기간	. . . ~ (일간)							
	실지 수습 기간	. . . ~ (일간)							

[별지 제6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은 붉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선군의회회의장

정선군의회 규칙 제17호

정선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 · 조사 · 연구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 조사 및 보고처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5. 그 밖의 법 제47조부터 제51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77회 정선군의회(2021. 12. 16.)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정선군의회회의장

정선군의회 규칙 제18호

정선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의 개정)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를 “제8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 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 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정선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정선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0조”를 “제61조”로 한다.

제3조(「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을 “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공포는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을”을 “「정선군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조례」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정선군회의 회의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3조----- ----- -----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 72조제1항----- -----.
제25조(안전심의) ①·② (생략)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전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안전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전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 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

제43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

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3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② -----

-----.

<후단 삭제> -----

---.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삭 제>

는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 정선군회의 회의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1조----- ----- -----.

□ 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u>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u>	<u>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정선군의회 규칙·규정의 공포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	제1조(목적) ----- -- 제32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제35조에 따른 ----- ----- ----- -----.

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①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또는 정선군의회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등에 대한 사무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조례의 공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포를 의미한다.

제4조(공포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집행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 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

② ----- 공포는 법 제32조제6항 -----
-----.

제4조(공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2조제6항 -----

--.

제8조(준용) -----
----- 「정선군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조례」를 -----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1-168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신동읍 예미리, 남면 무릉리 일원 도로 폭 협소 등으로 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됨에 교통시설 정비를 통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신동읍, 남면 도시지역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폭원 (m)	연장 (m)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중로	3	2	8~12	1,043	보조 간선 도로	중로1-2 북실리 산3-15임	중로1-2 북실리792-8도	일반 도로	정선정보 공업고교	강고15호 (92.2.13)	정선 도시지역
변경	중로	3	2	10~14	1,043	보조 간선 도로	중로1-2 북실리 산3-15임	중로1-2 북실리792-8도	일반 도로	정선정보 공업고교	강고15호 (92.2.13)	정선 도시지역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32	8	171	국지 도로	중로1-2 북실리770-6도	중로3-2 북실리780-17도	일반 도로	정선실업 고교	강고15호 (92.2.13)	정선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2	8	168	국지 도로	중로1-2 북실리770-6도	중로3-2 북실리780-2도	일반 도로	정선정보 공업고교	강고15호 (92.2.13)	정선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33	8	143	국지 도로	중로1-2 북실리773-9도	중로3-2 북실리780-17도	일반 도로	북실주공 아파트	강고15호 (92.2.13)	정선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3	8	141	국지 도로	중로1-2 북실리773-9도	중로3-2 북실리601-1도	일반 도로	북실주공 아파트	강고15호 (92.2.13)	정선 도시지역
기정	소로	3	31	7~8	211	국지 도로	중로3-2 북실리765-19학	2호 완충녹지 북실리762-4전	일반 도로	정선실업 고교	강고15호 (92.2.13)	정선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31	7~8	210	국지 도로	중로3-2 북실리765-19학	2호 완충녹지 북실리762-4전	일반 도로	정선정보 공업고교	강고15호 (92.2.13)	정선 도시지역

구분	규 모			폭원 (m)	연장 (m)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3	36	6	159	국지 도로	북실리 601-29도	중로3-2 북실리781-1전	일반 도로	-	강고134호 (85.12.14)	정선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36	6	161	국지 도로	북실리 601-29도	중로3-2 북실리781-8도	일반 도로	-	강고134호 (85.12.14)	정선 도시지역
기정	소로	3	4	6	267	국지 도로	중로3-2 예미리212-1답	소로 1-1 예미리204-1철	일반 도로	순복음 교회	정선고27호 (02.5.16)	신동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4	6	267	국지 도로	예미리212-12답	소로 1-1 예미리204-6철	일반 도로	순복음 교회	정선고27호 (02.5.16)	신동 도시지역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2	12~15	1,180	보조 간선 도로	중로2-1 무릉리819-60천	증산역앞 무릉리611-14도	일반 도로	-	강고108호 (91.9.6)	증산 도시지역
변경	중로	2	2	12~15	1,180	보조 간선 도로	중로2-1 무릉리819-60천	증산역앞 무릉리611-14도	일반 도로	-	강고108호 (91.9.6)	증산 도시지역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10	8	73	국지 도로	중로2-2 무릉리611-50대	소로 2-12 무릉리819-54도	일반 도로	-	강고52호 (87.5.1)	증산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0	8	55	국지 도로	중로2-2 무릉리611-91대	소로 2-12 무릉리819-54도	일반 도로	-	강고52호 (87.5.1)	증산 도시지역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중로3-2	중로3-2	◦ 폭원 및 선형변경 - B = 8 ~ 12 m → 10 ~ 14 m , L=1,043m	◦ 북실리(북실마루) 일원 도로폭이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 폭 및 선형 정비를 통하여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	정선 도시지역
소로2-32	소로2-32	◦ 연장 및 모퉁이 변경 -B=8m, L=171m→168m, 감)3m	◦ 중로3-2호선 변경에 따른 종점부 연장 및 도로 모퉁이 변경	정선 도시지역
소로2-33	소로2-33	◦ 연장 및 모퉁이 변경 -B=8m, L=143m→141m, 감)2m	◦ 중로3-2호선 변경에 따른 종점부 연장 및 도로 모퉁이 변경	정선 도시지역
소로3-31	소로3-31	◦ 연장 및 모퉁이 변경 -B=7~8m, L=211m→210m, 감)1m	◦ 중로3-2호선 변경에 따른 시점부 연장 및 도로 모퉁이 변경	정선 도시지역
소로3-36	소로3-36	◦ 연장 및 모퉁이 변경 -B=6m, L=159m→161m, 증)2m	◦ 중로3-2호선 변경에 따른 종점부 연장 및 도로 모퉁이 변경	정선 도시지역
소로3-4	소로3-4	◦ 선형변경 -B=6m, L=267m	◦ 기 개설된 현황도로에 맞추어 도로 선형변경	신동 도시지역
중로2-2	중로2-2	◦ 선형변경 -B=12~15m, L=1,180m	◦ 민동산역 앞 도로선형 변경을 통해 교통안전 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	증산 도시지역
소로2-10	소로2-10	◦ 연장변경 -B=8m, L=73m→55m, 감)18m	◦ 중로2-2호선 변경에 따른 시점부 연장 축소	증산 도시지역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7	노외주차장	정선읍 북실리 613-9번지 일원	-	증)443	443	금 회	정선 도시지역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	노외 주차장	◦ 주차장 신설 -A=443m ²	◦ 정선읍 일원 기 조성된 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 결정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 실
음생략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에서도 열람이 가능
함 (<http://www.eum.go.kr>)

정선군 고시 제2021-176호

정선군 조동1.2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정선군 조동1.2리(길운마을)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정 선 군 수

1.사업의 명칭 : 정선군 조동1.2리(길운마을)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안전·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3.사업비 : 2,241,237천원

- 국비 (1,583,000), 지방비 (546,000), 자부담 (112,237)

4.주요사업내용

-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1.2리 길운마을 일원
- 노후주택정비
 - 슬레이트 지붕개량 16호, 빈집철거 17호, 집수리 27호
- 안전·위생 및 기초생활 인프라
 - 길운천 제방정비(L=126m), 통행로 안전확보(옹벽 L=102m), 안전확보(태양광가로등 18개소, CCTV 1식, 마을방송시스템 1식), 소규모주차장조성 2개소, 도보교 조성(L=15m), 재래식 장실 정비 5개소, 노후급수관정비(L=176.2m)

○ 주민공동시설 및 경관시설 정비

- 길운 커뮤니티공간 조성(리모델링 167㎡), 조동2리 경로당 리모델링 및 목욕탕조성(181㎡), 분리수거장 조성 2개소, 마을취약지역 정비(담장보수 45m, 취약지역환경개선 1식)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휴먼케어(드라이플라워 전문가 양성) 1식, 주민역량강화(선진지 견학) 1식

5.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6. 사업기간 : 2020 ~ 2023(4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 033-560-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1522호

정선군 반운영 규칙 일부개정

「정선군 반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특정지역 인구 집중 등에 따라 행정구역(리·반) 조정을 통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정내용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조정)	통합	분할	폐지			
리	183	1	-	-	-	증1	184	
반	971	증6	감2	-	감3	증1	972	

나. 조정내역

읍·면	현 재	변 경(안)	조 정 사 유	비고
정선읍	애산2리 12반~14반	애산6리 1반(기존 애산2리 1반 일부)	아리채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및 행정리 구역이 넓은 점을 고 려, 주민편의 및 행정 능률 제고를	행정리 신설 (1)
		애산6리 2반(아리채 101동)		
		애산6리 3반(아리채 102동, 103동)		행정반 신설
		애산6리 4반(아리채 201동)		
		애산6리 5반(아리채 301동)		

		애산6리 6반(아리채 401동)	위해 행정리 신설	(6) 행정반 폐지 (3)
	봉양3리 6반~12반	봉양3리 6반, 7반(봉양3리 6반으로 통합) 봉양3리 9반, 11반(봉양3리 9반으로 통합) 봉양3리 12반(봉양3리 7반으로 명칭변경)	인구 감소에 따른 반 통합	통합2 (폐지2)
	애산2리 10반	애산리 432-66 대지151㎡ (봉양8리 3반으로 조정)	재산권 행사 제한 민원 해결	조정 (1)

다. 조정 총괄 내역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통합		폐지						
	리	반	리	반	리	반	리	반	리	반	리	반	
합 계	183	971							증1	증5	184	972	
정선읍	35	234	1	6		2		3	1	1	36	235	
고한읍	20	117									20	117	
사북읍	13	119									13	119	
신동읍	26	132									26	132	
화암면	13	49									13	49	
남 면	15	82									15	82	
여량면	14	65									14	65	
북평면	15	67									15	67	
임계면	32	106									32	106	

라. 조정 전·후 가구 및 인구현황

읍·면	리명	조정 전		리명	조정 후		
		반 명	가구(세대)		반 명	가구(세대)	인구(명)
정선읍	애산2리	1반	122 → 30	애산6리	1반	21	44
		2반	26		2반	22	70
		3반	20		3반	27	87
		4반	2		4반	28	79
		5반	15		5반	22	76
		6반	7		6반	28	88
		7반	23				
		8반	14				
		9반	13				
		10반	21				
		11반	11				
		12반	22 → 애산6리 2반				
		13반	22 → 애산6리 3반				
		14반	5 → 애산6리 3반				
	봉양3리	1반	17	33	1반	17	33
		2반	12	26	2반	12	26
		3반	19	34	3반	19	34
		4반	12	29	4반	12	29
		5반	22	53	5반	22	53
		6반	15	28	6반	21	40
		7반-→6반	6	12	7반	18	31
		8반	18	29	8반	18	29
		9반	8	20	9반	27	77
		10반	29	45	10반	29	45
		11반-9반	19	57			
		12반-7반	18	31			
	애산2리 10반	애산리 432-66 대지151m ²		봉양8리 3반	가구수, 인구수, 리수, 반수 변동 없음		

마. 지번조서

(정선읍 애산6리)

지번별	지목	지적(㎡)	비고
계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201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202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203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204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301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302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303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304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401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402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403호)	대	62.43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404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501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502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503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504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601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602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603호)	대	6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604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2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2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203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204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3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3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303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304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4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4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403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404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5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5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503호)	대	62.41	3반

지번별	지목	지적(㎡)	비고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504호)	대	6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6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6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603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604호)	대	6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2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2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3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3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4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4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403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404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5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5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503호)	대	6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504호)	대	6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6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6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201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202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203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204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301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302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303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304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401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402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403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404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501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502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503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504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601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602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603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604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701호)	대	56.87	4반

지번별	지목	지적(㎡)	비고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702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703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704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801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802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803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804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201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202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203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204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301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302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303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304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401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402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403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404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502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503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504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601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602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603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604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701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702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703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704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164	대	222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65	대	182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66	대	156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67	대	216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68	대	227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69	대	221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70	대	156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72	대	258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73	대	126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74	대	190	1반

지번별	지목	지적(㎡)	비고
정선읍 애산리 432-176	대	204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00	대	308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03	대	714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06	대	124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07	대	60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71	대	144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73	대	574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77	대	224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87	대	189	1반
정선읍 애산리 432-320	대	215	1반
정선읍 애산리 432-322	대	154	1반
정선읍 애산리 432-327	대	5	1반
정선읍 애산리 432-329	대	112	1반
정선읍 애산리 432-330	대	19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16	대	243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21	대	403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22	대	179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57	대	105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58	대	21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59	대	140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81	대	431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82	대	191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83	대	205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95	대	3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96	대	51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97	대	9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98	대	70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99	대	117	1반
정선읍 애산리 432-500	대	155	1반

(정선읍 봉양8리 3반)

지번별	지목	지적(㎡)	비고
정선읍 애산리 432-66	대	151	애산2리 10반

(정선읍 봉양3리)

지번별	지목	지적(㎡)	비고
봉양리 329-5	대	146	6반
봉양리 329-6	대	146	6반
봉양리 329-4	대	125	6반
봉양리 337-9	대	355	6반
봉양리 325-4	대	2130	6반
봉양리 326-4	대	299	6반
봉양리 324-7	대	313	6반
봉양리 326-5	대	387	6반
봉양리 329-3	대	99	6반
봉양리 337-11	대	116	6반
봉양리 327	대	3249	6반
봉양리 213	대	431	6반
봉양리 215-2	대	430	6반
봉양리 218-1	대	390	6반
봉양리 213	대	431	6반
봉양리 251-2	대	198	9반
봉양리 251-3	대	348	9반
봉양리 250-1	대	380	9반
봉양리 250-2	대	235	9반
봉양리 251-1	대	220	9반
봉양리 251-3	대	348	9반
봉양리 247-4, 201호	대	66.8	9반
봉양리 247-1	대	410	9반
봉양리 242	대	436	9반
봉양리 249-1	대	315	9반
봉양리 247-2	대	423	9반
봉양리 246-3	대	1337	9반
봉양리 247-3	대	300	9반
봉양리 247-4, 102호	대	66.8	9반
봉양리 247-4, 202호	대	66.8	9반
봉양리 247-4, 301호	대	66.7	9반

지번별	지목	지적(㎡)	비고
봉양리 247-4, 401호	대	66.7	9반
봉양리 247-4, 402호	대	66.7	9반
봉양리 247-7	대	103	9반
봉양리 248-3	대	579	9반
봉양리 214-3	대	212	7반
봉양리 213-0	대	431	7반
봉양리 214-1	대	152	7반
봉양리 213-4	대	229	7반
봉양리 213-2	대	222	7반
봉양리 211-2	대	406	7반
봉양리 211-1	대	1122	7반
봉양리 210-1	대	1550	7반
봉양리 327-0	대	3136	7반
봉양리 325-4	대	2130	7반
봉양리 328-6	대	60	7반
봉양리 329-5	대	146	7반
봉양리 267-6	대	23	7반
봉양리 329-6	대	146	7반
봉양리 329-4	대	125	7반
봉양리 329-2	대	216	7반
봉양리 329-9	대	87	7반
봉양리 329-3	대	99	7반
봉양리 337-9	대	355	7반
봉양리 337-11	대	116	7반
봉양리 337-19	대	74	7반
봉양리 337-20	대	80	7반
봉양리 328-1	대	102	7반
봉양리 325-3	대	69	7반
봉양리 326-5	대	387	7반
봉양리 326-4	대	299	7반
봉양리 326-3	대	354	7반
봉양리 324-33	대	58	7반
봉양리 324-7	대	313	7반
봉양리 324-47	대	97	7반
봉양리 324-46	대	5	7반

3. 예고기간 : 2021. 12. 27. ~ 11. 21.(20일간)

4. 규 칙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6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doswat@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반의 명칭(자연지명) 및 관할구역

리반 명칭			자연지명		관 할 구 역	
정선읍	봉양 3리	제 6반	중동	【마을】	봉양 3리	제 6반
	"	제 7반	중동	【마을】	"	제 7반
	"	제 8반	중동	【마을】	"	제 8반
	"	제 9반	중동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중동	【마을】	"	제 10반
	(삭제)	제 11반	중동	【마을】	"	제 11반
	(삭제)	제 12반	중동	【마을】	"	제 12반
	봉양 4리	제 1반	하동	【마을】	봉양 4리	제 1반
	"	제 2반	하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하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하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하동 우천거리	【마을】	"	제 5반
	"	제 6반	하동	【마을】	"	제 6반
	"	제 7반	하동 서남골 소금강	【마을】 【골짜기】 【산】	"	제 7반
	"	제 8반	하동	【마을】	"	제 8반
	"	제 9반	하동 비룡산(飛鳳山)	【마을】 【산】	"	제 9반
	봉양 5리	제 1반	녹도	【마을】	봉양 5리	제 1반
	"	제 2반	녹도 배나들 솔솔밭	【마을】 【나무】 【거리】	"	제 2반
	"	제 3반	녹도	【마을】	"	제 3반
	"	제 4반	녹도	【마을】	"	제 4반
	"	제 5반	녹도	【마을】	"	제 5반
	"	제 6반	녹도	【마을】	"	제 6반
	"	제 7반	녹도	【마을】	"	제 7반
	"	제 8반	녹도	【마을】	"	제 8반
	"	제 9반	녹도	【마을】	"	제 9반
	"	제 10반	녹도	【마을】	"	제 10반
	봉양 6리	제 1반	관음동(觀音洞), 진포리, 탑골, 직벌 의상대, 오리장	【마을】	봉양 6리	제 1반
"	제 2반	너우라지골 송정암(訟亭巖)	【골짜기】 【바위】	"	제 2반	
"	제 3반	생탄(生呑), 거릿말 말바우, 칠성바위 역말계	【마을】 【바위】 【고개】	"	제 3반	
"	제 4반	동골, 동곡(動谷), 안골 굼등, 분부산 배미골	【마을】 【산】 【골짜기】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관 할 구 역
정선읍	애산 1리	제 1반	오목골【마을】 웃모태이【골짜기】 범바우【바위】 범바우소【소】 철미산(鐵美山), 애산봉【산】 성안【성곽】	애산 1리 제 1반
	"	제 2반	병목【마을】 거리모태이, 아랫모태이【마을】 철미재【고개】 둔덕【산】	" 제 2반
	"	제 3반	엇내【마을】 어천(漁川)【하천】	" 제 3반
	"	제 4반	엇내, 남산밑【마을】 화약고골, 큰골, 작은골【골짜기】	" 제 4반
	"	제 5반	신촌【마을】	" 제 5반
	"	제 6반	신촌【마을】	" 제 6반
	애산 2리	제 1반	녹도(綠島), 섬버덩, 큰섬, 작은섬, 아랫녹도【마을】	애산 2리 제 1반
	"	제 2반	녹도(綠島)【마을】	" 제 2반
	"	제 3반	녹도(綠島)【마을】	" 제 3반
	"	제 4반	역전【마을】	" 제 4반
	"	제 5반	녹도(綠島)【마을】	" 제 5반
	"	제 6반	역전【마을】	" 제 6반
	"	제 7반	역전【마을】	" 제 7반
	"	제 8반	녹도(綠島)【마을】	" 제 8반
	"	제 9반	녹도(綠島)【마을】	" 제 9반
	"	제 10반	역전【마을】	" 제 10반
	"	제 11반	녹도(綠島)【마을】	" 제 11반
	"(삭제)	제 12반	녹도(綠島)【마을】	" 제 12반
	"(삭제)	제 13반	녹도(綠島)【마을】	" 제 13반
	"(삭제)	제 14반	녹도(綠島)【마을】	종전 " 제 12반(아리채 102동 201~802), 제 13반(아리채 102동 203~804)
	애산 3리	제 1반	오반리(五半里), 삼거리, 배나무골, 삼거리【마을】 둔전골, 천담배기골, 노래이골, 장아골, 빈지골, 이슬재골【골짜기】 올창바우【바위】 쇠직산, 너래이말랑, 큰봉【산】	애산 3리 제 1반
	"	제 2반	안질골, 오반동골【골짜기】 숯재이 고개【고개】 새덕【전답】	" 제 2반
애산 4리	제 1반	구미동【마을】	구미동【마을】	애산 4리 제 1반
	"	제 2반	구미동【마을】 노래이골, 방골【골짜기】 정선역【역】	" 제 2반
	"	제 3반	개골, 구암동【마을】 개골나루【나루】	" 제 3반
	"	제 4반	두건이골, 방골【골짜기】 이절【마을】 고사나루【나루】 오전이재【고개】 합금천(合衿川)【하천】	" 제 4반

리반 명칭			자연지명		관 할 구 역	
정선읍	애산 5리	제 1반	역전	【마을】	애산 5리	제 1반
	"	제 2반	역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녹도(綠島)	【마을】	"	제 3반
	"	제 4반	녹도(綠島)	【마을】	"	제 4반
	"	제 5반	녹도(綠島)	【마을】	"	제 5반
	"	제 6반	녹도(綠島)	【마을】	"	제 6반
	애산 6리 (신설)	제 1반	우묵골 웃모태이 범바우 범바우소 철미산(鐵美山), 애산봉 성안	【마을】 【골짜기】 【바위】 【소】 【산】 【성곽】	애산 6리	제 1반
	"(신설)	제 2반	아리채101동	【마을】	"	제 2반
	"(신설)	제 3반	아리채102동, 103동	【마을】	"	제 3반
	"(신설)	제 4반	아리채201동	【마을】	"	제 4반
	"(신설)	제 5반	아리채301동	【마을】	"	제 5반
	"(신설)	제 6반	아리채401동	【마을】	"	제 6반
	신월 1리	제 1반	와평(瓦坪) 철미재 철산골, 한골	【마을】 【고개】 【골짜기】	신월 1리	제 1반
	"	제 2반	와평(瓦坪) 까칠재	【마을】 【산】	"	제 2반
	"	제 3반	와평(瓦坪) 메내기재	【마을】 【고개】	"	제 3반
	"	제 4반	와평(瓦坪), 드름터 야음대(野陰臺), 남산 골매채기재	【마을】 【마을】	"	제 4반
	신월 2리	제 1반	월통(月通) 한재 새기골 양월산(仰月山)	【마을】 【고개】 【골짜기】 【산】	신월 2리	제 1반
	"	제 2반	월통(月通) 송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작은모양골, 큰모양골 옛재, 느진목이 국시댁이, 기우산(祈雨山) 화상봉 칠성백이	【마을】 【고개】 【산】 【도로】	"	제 3반
	"	제 4반	삼거리, 주막거리, 안질골 새터, 자진메기 박달골, 은점골 지르메재, 소재,	【마을】 【산】 【골짜기】 【고개】	"	제 4반
	"	제 5반	새터골 가내골, 가느골, 덕골, 통골, 코거리, 어둔골 새터재, 문두치(門頭寺) 새덕 감투봉	【마을】 【골짜기】 【고개】 【전답】 【산】	"	제 5반

정선군 공고 제2021-1523호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특정지역 인구 집중 등에 따라 행정구역(리·반) 조정을 통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정내용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조정)	통합	분할	폐지			
리	183	1	-	-	-	증1	184	
반	971	증6	감2	-	감3	증1	972	

나. 조정내역

읍·면	현 재	변 경(안)	조 정 사 유	비고
정선읍	애산2리 12반~14반	애산6리 1반(기존 애산2리 1반 일부) 애산6리 2반(아리채 101동) 애산6리 3반(아리채 102동, 103동) 애산6리 4반(아리채 201동) 애산6리 5반(아리채 301동) 애산6리 6반(아리채 401동)	아리채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및 행정리 구 역이 넓은 점을 고려,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행정리 신설	행정리 신설 (1) 행정반 신설 (6) 행정반 폐지 (3)

읍·면	리명	조정 전		리명	조정 후		
		반 명	가구(세대)		반 명	가구(세대)	인구(명)
정선읍	애산2리	1반	122 → 30	애산6리	1반	21	44
		2반	26		2반	22	70
		3반	20		3반	27	87
		4반	2		4반	28	79
		5반	15		5반	22	76
		6반	7		6반	28	88
		7반	23				
		8반	14				
		9반	13				
		10반	21				
		11반	11				
		12반	22 → 애산6리 2반				
		13반	22 → 애산6리 3반				
		14반	5 → 애산6리 3반				

다. 조정 규모

구 분		현 재					조 정					조 정 후				
		면적 km ²	가 구 수	인 구 수	리 수	반 수	면적 km ²	가 구 수	인 구 수	리 수	반 수	면적 km ²	가 구 수	인 구 수	리 수	반 수
종전 지역	애산2리		331	769	1	14		183	325	1	감3		183	325	1	11
변경 지역	애산6리							148	443	증1	증6		148	443	1	6

라. 조정 총괄 내역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통합		폐지						
	리	반	리	반	리	반	리	반	리	반	리	반	
합 계	183	971							증1	증5	184	972	
정선읍	35	234	1	6		2		3	1	1	36	235	
고한읍	20	117									20	117	
사북읍	13	119									13	119	
신동읍	26	132									26	132	
화암면	13	49									13	49	
남 면	15	82									15	82	
여량면	14	65									14	65	
북평면	15	67									15	67	
임계면	32	106									32	106	

마. 지번조서

(정선읍 애산6리)

지번별	지목	지적(㎡)	비고
계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201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202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203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204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301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302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303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304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401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402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403호)	대	62.43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404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501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502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503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504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601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602호)	대	62.48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603호)	대	6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1동 604호)	대	72.41	2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2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2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203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204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3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3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303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304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4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4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403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404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5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5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503호)	대	6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504호)	대	6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601호)	대	62.48	3반

지번별	지목	지적(㎡)	비고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6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603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2동 604호)	대	6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2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2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3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3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4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4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403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404호)	대	7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5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5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503호)	대	6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504호)	대	62.41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601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3(103동 602호)	대	62.48	3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201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202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203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204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301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302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303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304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401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402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403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404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501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502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503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504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601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602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603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604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701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702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703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704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801호)	대	56.87	4반

지번별	지목	지적(㎡)	비고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802호)	대	56.87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803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201동 804호)	대	64.22	4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201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202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203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204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301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302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303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304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401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402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403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404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502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503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504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601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602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603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604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701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702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703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493(301동 704호)	대	82	5반
정선읍 애산리 432-164	대	222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65	대	182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66	대	156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67	대	216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68	대	227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69	대	221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70	대	156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72	대	258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73	대	126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74	대	190	1반
정선읍 애산리 432-176	대	204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00	대	308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03	대	714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06	대	124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07	대	60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71	대	144	1반

지번별	지목	지적(㎡)	비고
정선읍 애산리 432-273	대	574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77	대	224	1반
정선읍 애산리 432-287	대	189	1반
정선읍 애산리 432-320	대	215	1반
정선읍 애산리 432-322	대	154	1반
정선읍 애산리 432-327	대	5	1반
정선읍 애산리 432-329	대	112	1반
정선읍 애산리 432-330	대	19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16	대	243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21	대	403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22	대	179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57	대	105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58	대	21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59	대	140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81	대	431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82	대	191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83	대	205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95	대	3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96	대	51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97	대	9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98	대	70	1반
정선읍 애산리 432-499	대	117	1반
정선읍 애산리 432-500	대	155	1반

3. 예고기간 : 2021. 12. 27. ~ 2022. 1. 16.(20일간)

4. 규 칙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 전 화 : 033 - 560 - 2236
- ▷ F A X : 033 - 560 - 2590
- ▷ E-mail : doswat@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 면	리 명	이장 정수	분구리명	구 역
계		184		
정선읍	봉양리	10	봉양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7리 8리 9리 10리	상동 일부(시장) 정선군법원, 삼우주택, 정선농협 부근 중동 하동 녹도 일부 관음, 생탄, 세대, 동곡 상동 일부, 적거리 녹도 일부 녹도 일부 봉양주공아파트, 보건소, 소방서 일원
	북실리	5	북실1리 2리 3리 4리 5리	용담, 계봉, 병방치 마미곡, 개간제, 오암, 부곡, 간곡 군부대, 아리랑아파트 일대 사내(미천) 미소빌아파트, 현대아파트
	덕송리	2	덕송1리 2리	석교동, 납덕동, 내반점, 외반점 월천, 송오
	애산리	6	애산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병방, 어촌, 신촌 역전 일부 오반 구미, 이절, 개끝 역전 일부 아리채
	신월리	2	신월1리 2리	와평, 드름터 월통, 신치, 어치
	덕우리	1	덕우리	덕산기, 대촌, 삼거리, 유천, 거어리
	여탄리	1	여탄리	옛둔, 화작동, 중북동, 본동
	회동리	2	회동1리 2리	월평, 사택 본동, 세곡, 양지마을, 마항(말목)
	용탄리	3	용탄1리 2리 3리	내촌, 곡구, 실론, 비룡동, 노미, 이평, 세곡 벽탄, 월평 기곡, 점촌, 행마
	광하리	2	광하1리 2리	광석, 군언, 상평, 송단, 모평, 선곡 망하, 여곡, 소탄, 마전
	굴암리	1	굴암리	상굴암, 본동, 하굴암, 의암, 월포, 동무지, 만지산, 옷바우
	가수리	1	가수리	수매, 북대, 가탄, 해매

정선군 공고 제2021-1547호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 정선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정 선 군 수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로 등 군계획시설사업 (총 276개 시설)

나.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아래 단계별 집행계획 내역참조

다. 사업시행기간

- 1단계 : 2021년 ~ 2023년
- 2-1단계 : 2024년 ~ 2025년
- 2-2단계 : 2026년 이후

라.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마. 단계별 집행계획 내역 : 붙임참조

□ 단계별 집행계획 내역

연번	소재지	구분	시설명	집행 단계	사업 기간	최초 결정일	사업량 (㎡)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21~2026년, 백만원)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 채	공 기 업	비재정적		1단계 *1년~ *3년차	2-1단계 *4년~ *5년차		2-2단계 *6년차 이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	정선읍	도로	소로1-23	1단계	2021-2023 년	2020-10-08	2,574	401	401		401		401					401			2040-10-08
2	정선읍	도로	소로1-24	1단계	2021-2023 년	2020-10-08	807	800	800		800		800					800			2040-10-08
3	정선읍	도로	소로2-2	1단계	2021-2023 년	1992-02-13	7,745	1,092	1,092		1,092		1,092					1,092			2020-07-01
4	정선읍	도로	소로2-15	1단계	2021-2023 년	2003-05-09	1,516	107	107		107		107					107			2023-05-09
5	정선읍	도로	소로2-34	1단계	2021-2023 년	2010-07-09	425	267	267		267		267					267			2030-07-09
6	정선읍	도로	소로3-10	1단계	2021-2023 년	2003-05-09	2,734	210	210		210		210					210			2023-05-09
7	정선읍	도로	소로3-13	1단계	2021-2023 년	1985-12-14	715	401	401		401		401					401			2020-07-01
8	정선읍	도로	소로3-37	2-2단계	2026년이후	2010-07-23	433	688	688		688		688							688	2030-07-23
9	정선읍	도로	소로3-46	2-2단계	2026년이후	2009-06-02	619	90	90		90		90							90	2029-06-02
10	정선읍	도로	소로3-51	2-2단계	2026년이후	2016-04-15	1,033	322	322		322		322							322	2036-04-15
11	정선읍	도로	소로3-52	2-2단계	2026년이후	2016-04-15	741	1,043	1,043		1,043		1,043							1,043	2036-04-15
12	정선읍	도로	소로3-53	2-2단계	2026년이후	2017-06-30	84	12	12		12		12							12	2037-06-30
13	정선읍	주차 장	주차장1	1단계	2021-2023 년	2019-02-28	2,306	648	648		648		648					648			2039-02-28
14	정선읍	주차 장	주차장14	2-2단계	2026년이후	2019-10-11	1,086	542	542		542		542							542	2039-10-11
15	정선읍	녹지	완충녹지5	1단계	2021-2023 년	2003-04-28	2,190	307	307		307		307					307			2023-04-28
16	정선읍	공원	소공원5	1단계	2021-2023 년	2020-04-10	1,383	1,028	1,028		1,028		1,028					1,028			2040-04-10
17	사북읍	도로	중로2-10	2-1단계	2024-2025 년	2009-06-05	14,492	1,353	1,353		1,353		1,353						1,353		2029-06-05
18	사북읍	도로	중로3-3	1단계	2021-2023 년	1979-02-08	1,601	214	214		214		214					214			2020-07-01
19	고한읍	도로	중로3-A	2-1단계	2024-2025 년	2019-11-20	5,140	909	909							909			909		2039-11-20
20	사북읍	도로	소로2-10	1단계	2021-2023 년	2002-05-16	6,132	1,411	1,411		1,411		1,411					1,411			2022-05-16
21	고한읍	도로	소로2-14	1단계	2021-2023 년	2002-05-16	2,426	447	447		447		447					447			2022-05-16
22	고한읍	도로	소로2-20	1단계	2021-2023 년	1979-02-08	4,409	234	234		234		234					234			2020-07-01
23	고한읍	도로	소로2-23	1단계	2021-2023 년	1973-12-26	1,276	2,266	2,266		2,266		2,266					2,266			2020-07-01
24	고한읍	도로	소로2-30	2-1단계	2024-2025 년	2010-07-09	422	514	514		514		514						514		2030-07-09
25	고한읍	도로	소로2-34	1단계	2021-2023 년	2002-05-16	2,886	450	450		450		450					450			2022-05-16
26	고한읍	도로	소로2-36	1단계	2021-2023 년	2002-05-16	7,465	1,867	1,867		1,867		1,867					1,867			2022-05-16
27	고한읍	도로	소로2-40	1단계	2021-2023 년	2002-05-16	1,100	255	255		255		255					255			2022-05-16
28	사북읍	도로	소로2-46	2-1단계	2024-2025 년	2005-05-13	592	1,890	1,890		1,890		1,890						1,890		2025-05-13
29	고한읍	도로	소로2-49	1단계	2021-2023 년	2010-05-07	701	102	102		102		102					102			2030-05-07
30	고한읍	도로	소로2-52	1단계	2021-2023 년	2002-05-16	5,491	1,031	1,031		1,031		1,031					1,031			2022-05-16
31	사북읍	도로	소로2-54	1단계	2021-2023 년	2020-05-22	3,140	1,814	1,814		1,814		1,814					1,814			2040-05-22
32	고한읍	도로	소로3-2	2-1단계	2024-2025 년	2006-02-17	453	123	123		123		123						123		2026-02-17

연번	소재지	구분	시설명	집행 단계	사업 기간	최초 결정일	사업량 (㎡)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21~2026년, 백만원)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 채	공 기 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년																
33	고한읍	도로	소로3-31	1단계	2021-2023 년	1973-12-26	335	430	430		430		430					430			2020-07-01
34	사북읍	도로	소로3-36	2-2단계	2026년이후	2016-04-15	674	1,247	1,247		1,247		1,247						1,247		2036-04-15
35	사북읍	도로	소로3-39	2-2단계	2026년이후	2016-03-04	1,105	3,301	3,301		3,301		3,301						3,301		2036-03-04
36	사북읍	도로	소로3-40	2-2단계	2026년이후	2020-05-22	1,269	75	75		75		75						75		2040-05-22
37	고한읍	주차 장	주차장17	1단계	2021-2023 년	2010-07-09	912	1,459	1,459		1,459		1,459					1,459			2030-07-09
38	사북읍	녹지	완충녹지1	1단계	2021-2023 년	2002-04-15	25,495	3,903	3,903							3,903		3,903			2022-04-15
39	사북읍	녹지	경관녹지1	2-2단계	2026년이후	2013-09-13	45	4	4							4			4		2033-09-13
40	사북읍	녹지	경관녹지2	2-2단계	2026년이후	2013-09-13	1,133	113	113							113				113	2033-09-13
41	고한읍	공원	근린공원2	2-2단계	2026년이후	1976-12-07	136,002	11,845	11,845		11,845		11,845						11,845		2020-07-01 (실효유예)
42	사북읍	공원	어린이공 원5	1단계	2021-2023 년	2002-04-15	1,550	391	391		391		391					391			2022-04-15
43	고한읍	공원	어린이공 원6	1단계	2021-2023 년	2002-04-15	1,607	145	145		145		145					145			2022-04-15
44	고한읍	공원	어린이공 원7	1단계	2021-2023 년	2002-04-15	1,600	174	174		174		174					174			2022-04-15
45	고한읍	공원	어린이공 원8	1단계	2021-2023 년	2006-02-17	2,200	191	191		191		191					191			2026-02-17
46	사북읍	공원	어린이공 원11	2-1단계	2024-2025 년	2013-09-13	1,540	185	185							185			185		2033-09-13
47	사북읍	공원	어린이공 원12	2-2단계	2026년이후	2013-09-13	1,715	202	202							202				202	2033-09-13
48	신동읍	도로	소로1-6	1단계	2021-2023 년	2005-03-19	911	172	172		172		172					172			2025-03-19
49	신동읍	도로	소로3-1	1단계	2021-2023 년	1985-12-14	1,368	102	102		102		102					102			2020-07-01
50	신동읍	주차 장	주차장2	1단계	2021-2023 년	2002-05-16	798	288	288		288		288					288			2022-05-16
51	신동읍	주차 장	주차장3	1단계	2021-2023 년	2002-05-16	1,570	168	168		168		168					168			2022-05-16
52	신동읍	공원	근린공원1	2-2단계	2026년이후	1977-09-22	35,243	3,066	3,066		3,066		3,066							3,066	2020-07-01 (실효유예)
53	신동읍	공원	어린이공 원5	1단계	2021-2023 년	2002-05-20	1,427	212	212		212		212					212			2022-05-20
54	신동읍	공원	어린이공 원7	2-2단계	2026년이후	1985-12-14	2,829	246	246		246		246							246	2020-07-01 (실효유예)
55	신동읍	유원 지	유원지1	2-1단계	2024-2025 년	2005-03-19	1,112,394	69,553	69,553		69,553		69,553						69,553		2025-03-19
56	신동읍	연구 시설	연구시설1	2-1단계	2024-2025 년	2019-12-06	7,525	830	830		830		830						830		2039-12-06
57	남면	도로	소로1-6	1단계	2021-2023 년	1991-09-06	1,738	683	683		683		683					683			2020-07-01
58	남면	도로	소로1-8	2-2단계	2026년이후	2010-07-09	112	39	39		39		39							39	2030-07-09
59	남면	도로	소로3-13	1단계	2021-2023 년	2002-05-16	617	90	90		90		90					90			2022-05-16
60	남면	도로	소로3-14	1단계	2021-2023 년	2002-05-16	651	173	173		173		173					173			2022-05-16
61	남면	도로	소로3-21	1단계	2021-2023 년	2002-05-16	353	36	36		36		36					36			2022-05-16
62	남면	도로	소로3-25	2-2단계	2026년이후	2016-04-15	349	503	503		503		503							503	2036-04-15
63	여량면	도로	중로3-5	1단계	2021-2023 년	2020-12-04	2,468	709	709		709		709					709			2040-12-04
64	여량면	도로	소로1-7	1단계	2021-2023 년	2003-05-09	2,924	772	772		772		772					772			2023-05-09
65	여량면	도로	소로2-8	1단계	2021-2023 년	2003-04-28	874	199	199		199		199					199			2023-04-28

연번	소재지	구분	시설명	집행 단계	사업 기간	최초 결정일	사업량 (㎡)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21~2026년, 백만원)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 채	공 기 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66	여량면	도로	소로2-14	1단계	2021~2023 년	2003-04-28	1,312	332	332		332		332					332			2023-04-28
67	여량면	도로	소로2-18	2-1단계	2024~2025 년	2007-11-16	1,642	146	146		146		146						146		2027-11-16
68	여량면	도로	소로2-19	2-1단계	2024~2025 년	2010-07-09	897	266	266		266		266						266		2030-07-09
69	여량면	도로	소로3-6	1단계	2021~2023 년	1978-02-28	1,272	139	139		139		139					139			2020-07-01
70	북평면	도로	중로2-6	1단계	2021~2023 년	2003-05-09	6,753	1,075	1,075		1,075		1,075					1,075			2023-05-09
71	북평면	도로	소로1-2	1단계	2021~2023 년	1986-06-07	3,803	867	867		867		867					867			2020-07-01
72	북평면	도로	소로1-6	2-1단계	2024~2025 년	2016-04-15	1,633	2,301	2,301		2,301		2,301						2,301		2036-04-15
73	북평면	도로	소로2-16	1단계	2021~2023 년	2003-05-09	3,919	800	800		800		800					800			2023-05-09
74	북평면	도로	소로3-19	2-2단계	2026년이후	2010-07-09	2,202	189	189		189		189						189		2030-07-09
75	북평면	도로	소로3-20	2-2단계	2026년이후	2010-07-09	474	184	184		184		184						184		2030-07-09
76	북평면	도로	소로3-24	2-2단계	2026년이후	2021-07-09	712	46	46		46		46						46		2041-07-09
77	북평면	도로	소로3-25	2-2단계	2026년이후	2021-07-09	1,189	189	189		189		189						189		2041-07-09
78	북평면	도로	소로3-26	2-2단계	2026년이후	2021-07-09	640	95	95		95		95						95		2041-07-09
79	임계면	도로	소로2-18	1단계	2021~2023 년	2003-04-28	1,984	748	748		748		748					748			2023-04-28
80	임계면	도로	소로2-19	2-2단계	2026년이후	2010-07-09	659	1,064	1,064		1,064		1,064						1,064		2030-07-09
81	임계면	도로	소로3-5	1단계	2021~2023 년	2003-04-28	1,831	255	255		255		255					255			2023-04-28
82	임계면	도로	소로3-6	1단계	2021~2023 년	2003-04-28	1,837	235	235		235		235					235			2023-04-28
83	임계면	도로	소로3-11	1단계	2021~2023 년	2003-04-28	4,178	703	703		703		703					703			2023-04-28
84	임계면	도로	소로3-12	1단계	2021~2023 년	2010-07-09	82	15	15		15		15					15			2030-07-09
85	임계면	도로	소로3-14	2-2단계	2026년이후	2010-07-09	1,692	151	151		151		151						151		2030-07-09
86	임계면	녹지	완충녹지5	1단계	2021~2023 년	2003-04-28	3,710	719	719		719		719					719			2023-04-28
87	임계면	녹지	완충녹지6	1단계	2021~2023 년	2003-04-28	1,890	244	244		244		244					244			2023-04-28
88	북평면 (비도시)	도로	소로2-군3C	1단계	2021~2023 년	2010-07-09	30,823	4,500	4,500		4,500		4,500					4,500			2030-07-09
89	화암면 (비도시)	도로	소로2-E1	1단계	2021~2023 년	2009-05-22	4,195	857	857		857		857					857			2029-05-22
90	화암면 (비도시)	도로	소로2-E2	1단계	2021~2023 년	2009-05-22	905	181	181		181		181					181			2029-05-22
91	화암면 (비도시)	도로	소로2-E3	1단계	2021~2023 년	2009-05-22	1,420	296	296		296		296					296			2029-05-22
92	화암면 (비도시)	도로	소로2-E4	1단계	2021~2023 년	2009-05-22	1,206	251	251		251		251					251			2029-05-22
93	화암면 (비도시)	도로	소로2-E5	1단계	2021~2023 년	2009-05-22	1,407	607	607		607		607					607			2029-05-22
94	화암면 (화암취락)	도로	소로3-20	2-2단계	2026년이후	2017-12-05	438	272	272		272		272						272		2037-12-05
95	화암면 (화암취락)	주차 장	주차장1	2-2단계	2026년이후	2014-12-10	7,270	1,320	1,320		1,320		1,320						1,320		2034-12-10
96	남면 (문곡취락)	도로	소로2-14	1단계	2021~2023 년	2001-11-17	891	70	70		70		70					70			2021-11-17
97	남면 (문곡취락)	도로	소로3-10	1단계	2021~2023 년	2001-11-17	614	78	78		78		78					78			2021-11-17

연번	소재지	구분	시설명	집행 단계	사업 기간	최초 결정일	사업량 (㎡)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21~2026년, 백만원)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 채	공 기 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98	남면 (문곡취락)	도로	소로3-12	1단계	2021~2023 년	2001-11-17	488	94	94		94		94				94			2021-11-17	
99	남면 (문곡취락)	도로	소로3-13	2~2단계	2026년이후	2017-12-05	201	66	66		66		66						66	2037-12-05	
100	남면 (문곡취락)	주차 장	주차장5	2~1단계	2024~2025 년	2011-06-01	1,887	641	641		641		641					641		2031-06-01	
101	남면 (문곡취락)	녹지	완충녹지1	2~2단계	2026년이후	2011-01-28	21,919	5,037	5,037		5,037		5,037						5,037	2031-01-28	
102	사복읍 (도사곡)	도로	소로2-42	1단계	2021~2023 년	2005-06-10	5,893	1,630	1,630							1,630		1,630		2025-06-10	
103	사복읍 (도사곡)	도로	소로2-44	1단계	2021~2023 년	2005-06-10	975	281	281							281		281		2025-06-10	
104	사복읍 (도사곡)	도로	소로2-45	1단계	2021~2023 년	2005-06-10	178	51	51							51		51		2025-06-10	
105	사복읍 (도사곡)	도로	소로3-33	1단계	2021~2023 년	2005-06-10	1,672	483	483							483		483		2025-06-10	
106	사복읍 (도사곡)	도로	소로3-36	1단계	2021~2023 년	2005-06-10	219	63	63							63		63		2025-06-10	
107	사복읍 (도사곡)	도로	소로3-38	1단계	2021~2023 년	2005-06-10	261	75	75							75		75		2025-06-10	
108	사복읍 (도사곡)	도로	소로3-40	1단계	2021~2023 년	2005-06-10	118	34	34							34		34		2025-06-10	
109	사복읍 (도사곡)	도로	소로3-41	1단계	2021~2023 년	2005-06-10	245	71	71							71		71		2025-06-10	
110	사복읍 (도사곡)	도로	소로3-42	1단계	2021~2023 년	2005-06-10	240	69	69							69		69		2025-06-10	
111	사복읍 (도사곡)	도로	소로3-43	2~2단계	2026년이후	2015-12-31	532	154	154							154			154	2035-12-31	
112	사복읍 (도사곡)	도로	소로3-44	2~2단계	2026년이후	2015-12-31	434	125	125							125			125	2035-12-31	
113	사복읍 (도사곡)	도로	소로3-45	2~2단계	2026년이후	2015-12-31	542	156	156							156			156	2035-12-31	
114	사복읍 (도사곡)	도로	소로3-46	2~2단계	2026년이후	2015-12-31	141	41	41							41			41	2035-12-31	
115	사복읍 (도사곡)	주차 장	주차장12	1단계	2021~2023 년	2005-06-10	700	148	148							148		148		2025-06-10	
116	사복읍 (도사곡)	주차 장	주차장13	1단계	2021~2023 년	2005-06-10	1,411	298	298							298		298		2025-06-10	
117	사복읍 (도사곡)	공원	어린이공 원11	1단계	2021~2023 년	2005-06-10	380	87	87							87		87		2025-06-10	
118	사복읍 (도사곡)	공원	어린이공 원12	1단계	2021~2023 년	2005-06-10	423	97	97							97		97		2025-06-10	
119	여량면 (구절)	도로	소로1-2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2,352	562	562		562		562						562	2028-02-22	
120	여량면 (구절)	도로	소로1-3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743	224	224		224		224						224	2028-02-22	
121	여량면 (구절)	도로	소로1-4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1,200	362	362		362		362						362	2028-02-22	
122	여량면 (구절)	도로	소로2-2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233	479	479		479		479						479	2028-02-22	
123	여량면 (구절)	도로	소로2-3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721	154	154		154		154						154	2028-02-22	
124	여량면 (구절)	도로	소로2-4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908	241	241		241		241						241	2028-02-22	
125	여량면 (구절)	도로	소로2-5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915	236	236		236		236						236	2028-02-22	
126	여량면 (구절)	도로	소로2-6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921	223	223		223		223						223	2028-02-22	
127	여량면 (구절)	도로	소로2-7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697	504	504		504		504						504	2028-02-22	
128	여량면 (구절)	도로	소로2-9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397	94	94		94		94						94	2028-02-22	
129	여량면 (구절)	도로	소로3-2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255	114	114		114		114						114	2028-02-22	
130	여량면 (구절)	주차 장	주차장1	2~1단계	2024~2025 년	2019-05-17	1,275	113	113		113		113						113	2039-05-17	

연번	소재지	구분	시설명	집행 단계	사업 기간	최초 결정일	사업량 (㎡)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21~2026년, 백만원)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 채	공 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31	여량면 (구절)	주차 장	주차장2	2-1단계	2024-2025 년	2019-05-17	733	123	123		123		123						123		2039-05-17
132	여량면 (구절)	주차 장	주차장3	2-1단계	2024-2025 년	2019-05-17	735	122	122		122		122						122		2039-05-17
133	여량면 (구절)	주차 장	주차장4	2-1단계	2024-2025 년	2019-05-17	2,385	292	292		292		292						292		2039-05-17
134	여량면 (구절)	광장	광장1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1,110	199	199		199		199						199		2028-02-22
135	여량면 (구절)	녹지	경관녹지1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14,753	1,534	1,534		1,534		1,534						1,534		2028-02-22
136	여량면 (구절)	녹지	경관녹지2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183	26	26		26		26						26		2028-02-22
137	여량면 (구절)	녹지	경관녹지3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732	107	107		107		107						107		2028-02-22
138	여량면 (구절)	녹지	경관녹지4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328	26	26		26		26						26		2028-02-22
139	여량면 (구절)	녹지	경관녹지5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419	46	46		46		46						46		2028-02-22
140	여량면 (구절)	녹지	경관녹지6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1,175	127	127		127		127						127		2028-02-22
141	여량면 (구절)	녹지	경관녹지7	2-1단계	2024-2025 년	2008-02-22	2,970	259	259		259		259						259		2028-02-22
142	여량면 (구절)	공원	어린이공 원1	2-1단계	2024-2025 년	2020-08-28	2,192	265	265		265		265						265		2040-08-28
143	여량면 (구절)	공원	소공원1	2-1단계	2024-2025 년	2019-05-17	484	71	71		71		71						71		2039-05-17
144	여량면 (구절)	공원	소공원2	2-1단계	2024-2025 년	2019-05-17	1,201	176	176		176		176						176		2039-05-17
145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중로2-1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4,796	741	741		741		741						741		2029-08-21
146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중로2-2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3,607	527	527		527		527							527	2029-08-21
147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중로2-3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4,376	2,741	2,741		2,741		2,741						2,741		2029-08-21
148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1-1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8,806	1,653	1,653		1,653		1,653							1,653	2029-08-21
149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1-2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799	337	337		337		337							337	2029-08-21
150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1-3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597	359	359		359		359						359		2029-08-21
151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1-4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904	179	179		179		179						179		2029-08-21
152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1-5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2,352	441	441		441		441						441		2029-08-21
153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1-6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013	173	173		173		173						173		2029-08-21
154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1-7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087	376	376		376		376							376	2029-08-21
155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1-8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335	407	407		407		407							407	2029-08-21
156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1-9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4,607	828	828		828		828							828	2029-08-21
157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1-10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233	243	243		243		243							243	2029-08-21
158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1-11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245	193	193		193		193							193	2029-08-21
159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1-12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0,843	1,877	1,877		1,877		1,877							1,877	2029-08-21
160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1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250	47	47		47		47						47		2029-08-21
161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2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250	43	43		43		43						43		2029-08-21
162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3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4,685	913	913		913		913						913		2029-08-21
163	사북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4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587	119	119		119		119							119	2029-08-21

연번	소재지	구분	시설명	집행 단계	사업 기간	최초 결정일	사업량 (㎡)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21~2026년, 백만원)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 채	공 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년~ '3년차		'4년~ '5년차	'6년차 이후
164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5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724	141	141		141		141						141	2029-08-21	
165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6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53	52	52		52		52						52	2029-08-21	
166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7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488	496	496		496		496						496	2029-08-21	
167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8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932	180	180		180		180					180		2029-08-21	
168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9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848	163	163		163		163					163		2029-08-21	
169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10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240	434	434		434		434						434	2029-08-21	
170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11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2,129	590	590		590		590					590		2029-08-21	
171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12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118	201	201		201		201					201		2029-08-21	
172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13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424	296	296		296		296						296	2029-08-21	
173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14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277	439	439		439		439						439	2029-08-21	
174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15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089	205	205		205		205					205		2029-08-21	
175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16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819	209	209		209		209					209		2029-08-21	
176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17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2,339	447	447		447		447					447		2029-08-21	
177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18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3,258	541	541		541		541						541	2029-08-21	
178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19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5,970	1,123	1,123		1,123		1,123						1,123	2029-08-21	
179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20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50	50	50		50		50						50	2029-08-21	
180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21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50	43	43		43		43						43	2029-08-21	
181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22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599	118	118		118		118						118	2029-08-21	
182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23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930	176	176		176		176						176	2029-08-21	
183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24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087	198	198		198		198						198	2029-08-21	
184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25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095	213	213		213		213						213	2029-08-21	
185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26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759	537	537		537		537						537	2029-08-21	
186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27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3,020	552	552		552		552						552	2029-08-21	
187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28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50	48	48		48		48						48	2029-08-21	
188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29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122	212	212		212		212						212	2029-08-21	
189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30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132	217	217		217		217						217	2029-08-21	
190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31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142	218	218		218		218						218	2029-08-21	
191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32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243	215	215		215		215						215	2029-08-21	
192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33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832	151	151		151		151						151	2029-08-21	
193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34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233	385	385		385		385						385	2029-08-21	
194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35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67	40	40		40		40						40	2029-08-21	
195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36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798	338	338		338		338						338	2029-08-21	
196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37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3,138	617	617		617		617						617	2029-08-21	

연번	소재지	구분	시설명	집행 단계	사업 기간	최초 결정일	사업량 (㎡)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21~2026년, 백만원)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 채	공 기업	비재정적		1단계 *1년~ *3년차	2-1단계 *4년~ *5년차		2-2단계 *6년차 이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97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38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056	405	405		405		405						405	2029-08-21	
198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39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697	141	141		141		141						141	2029-08-21	
199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40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939	192	192		192		192						192	2029-08-21	
200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41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367	72	72		72		72						72	2029-08-21	
201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42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600	281	281		281		281						281	2029-08-21	
202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43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742	294	294		294		294						294	2029-08-21	
203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44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635	106	106		106		106						106	2029-08-21	
204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45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683	104	104		104		104						104	2029-08-21	
205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46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861	157	157		157		157					157		2029-08-21	
206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47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143	201	201		201		201					201		2029-08-21	
207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48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456	241	241		241		241					241		2029-08-21	
208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49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240	41	41		41		41					41		2029-08-21	
209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50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40	49	49		49		49						49	2029-08-21	
210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51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41	48	48		48		48						48	2029-08-21	
211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52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40	48	48		48		48						48	2029-08-21	
212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53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41	46	46		46		46						46	2029-08-21	
213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54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40	48	48		48		48						48	2029-08-21	
214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55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56	48	48		48		48						48	2029-08-21	
215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56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941	137	137		137		137					137		2029-08-21	
216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2-57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240	42	42		42		42					42		2029-08-21	
217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3-1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292	43	43		43		43					43		2029-08-21	
218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3-2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412	81	81		81		81						81	2029-08-21	
219	사복읍 (사북직전)	도로	소로3-3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96	43	43		43		43						43	2029-08-21	
220	사복읍 (사북직전)	주차 장	주차장1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647	183	183		183		183					183		2029-08-21	
221	사복읍 (사북직전)	주차 장	주차장2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098	129	129		129		129					129		2029-08-21	
222	사복읍 (사북직전)	주차 장	주차장3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392	125	125		125		125					125		2029-08-21	
223	사복읍 (사북직전)	주차 장	주차장4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260	111	111		111		111					111		2029-08-21	
224	사복읍 (사북직전)	광장	광장1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812	160	160		160		160					160		2029-08-21	
225	사복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1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2,180	167	167		167		167					167		2029-08-21	
226	사복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2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16	8	8		8		8					8		2029-08-21	
227	사복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3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663	207	207		207		207					207		2029-08-21	
228	사복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4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3,409	327	327		327		327						327	2029-08-21	
229	사복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5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2,706	260	260		260		260						260	2029-08-21	

연번	소재지	구분	시설명	집행 단계	사업 기간	최초 결정일	사업량 (㎡)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21~2026년, 백만원)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 채	공 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년~ *3년차		*4년~ *5년차	*6년차 이후
230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6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38	3	3		3		3					3		2029-08-21	
231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7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79	6	6		6		6					6		2029-08-21	
232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8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343	25	25		25		25					25		2029-08-21	
233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9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4,144	373	373		373		373					373		2029-08-21	
234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10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962	78	78		78		78					78		2029-08-21	
235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11	2-2단계	2026년 이후	2009-08-21	3,356	325	325		325		325						325	2029-08-21	
236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12	2-2단계	2026년 이후	2009-08-21	3,382	348	348		348		348						348	2029-08-21	
237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13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262	27	27		27		27					27		2029-08-21	
238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14	2-2단계	2026년 이후	2009-08-21	11,224	998	998		998		998						998	2029-08-21	
239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15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597	89	89		89		89					89		2029-08-21	
240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16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315	23	23		23		23					23		2029-08-21	
241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17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92	23	23		23		23					23		2029-08-21	
242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18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863	208	208		208		208					208		2029-08-21	
243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19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383	104	104		104		104					104		2029-08-21	
244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20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6,379	493	493		493		493					493		2029-08-21	
245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경관녹지21	2-2단계	2026년 이후	2009-08-21	2,585	324	324		324		324						324	2029-08-21	
246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1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092	127	127		127		127					127		2029-08-21	
247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2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378	34	34		34		34					34		2029-08-21	
248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3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029	99	99		99		99					99		2029-08-21	
249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4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360	145	145		145		145					145		2029-08-21	
250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5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044	126	126		126		126					126		2029-08-21	
251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6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529	257	257		257		257					257		2029-08-21	
252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7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360	146	146		146		146					146		2029-08-21	
253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8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818	105	105		105		105					105		2029-08-21	
254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9	2-2단계	2026년 이후	2009-08-21	596	59	59		59		59						59	2029-08-21	
255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10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049	111	111		111		111					111		2029-08-21	
256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11	2-2단계	2026년 이후	2009-08-21	580	57	57		57		57						57	2029-08-21	
257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12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030	125	125		125		125					125		2029-08-21	
258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13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720	91	91		91		91					91		2029-08-21	
259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14	2-2단계	2026년 이후	2009-08-21	1,522	188	188		188		188						188	2029-08-21	
260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15	2-2단계	2026년 이후	2009-08-21	1,253	151	151		151		151						151	2029-08-21	
261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16	2-2단계	2026년 이후	2009-08-21	1,603	193	193		193		193						193	2029-08-21	
262	사북읍	녹지	완충녹지1	2-1단계	2024-2025	2009-08-21	1,474	183	183		183		183					183		2029-08-21	

연번	소재지	구분	시설명	집행 단계	사업 기간	최초 결정일	사업량 (㎡)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2021~2026년, 백만원)											실효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 채	공 기 업	비재정적		1단계 *1년~ *3년차	2-1단계 *4년~ *5년차		2-2단계 *6년차 이후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사북직전)		7		년																
263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1 8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051	101	101		101		101							101	2029-08-21
264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1 9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052	107	107		107		107							107	2029-08-21
265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2 0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602	51	51		51		51							51	2029-08-21
266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2 1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662	77	77		77		77							77	2029-08-21
267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2 2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616	87	87		87		87						87		2029-08-21
268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2 3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127	234	234		234		234						234		2029-08-21
269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2 4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645	83	83		83		83						83		2029-08-21
270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2 5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651	181	181		181		181						181		2029-08-21
271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2 6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856	194	194		194		194						194		2029-08-21
272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2 7	2-1단계	2024-2025 년	2009-08-21	1,978	240	240		240		240						240		2029-08-21
273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2 8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438	55	55		55		55							55	2029-08-21
274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2 9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393	37	37		37		37							37	2029-08-21
275	사북읍 (사북직전)	녹지	완충녹지3 0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811	80	80		80		80							80	2029-08-21
276	사북읍 (사북직전)	하수 도	하수도1	2-2단계	2026년이후	2009-08-21	1,503	182	182		182		182							182	2029-08-21

정선군 공고 제2022-6호

정선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 1. 22일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소속 직

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정선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선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제6조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기 획 관 서 건 회